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개정 (안)

2018. 1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부 의 안

제 127 회 이 사 회			
연 월 일	2018. 10. 5	의안번호	제 1 호
의 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개정(안)		
구 분	의 결 사 항		

- 제 안 자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 주 문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공단) 정관(안)과 관련 조례·규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정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함.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참고사항
 - 제안근거 : 공사 정관 제25조 제3호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합의 필
 - 절 차 : 서울특별시장 인가 후 공포 시행
 - 기 타 : 정관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1. 제정(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정관 표준(안) 통보('18.3.2)에 따라 표준정관(안)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11조(임기) :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연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신설

현 행	○ 해당 조항 없음
개정(안)	○ 비상임이사(감사) 연임시키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제28조(의결방법) : 특별안건 신설 및 의결 정족수 강화

현 행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별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 없음
개정(안)	○ 일반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별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기본방침 결정, 예결산 승인, 정관 변경, 조직·기구 관련

- 제35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시효의 완성 및 귀속 내용 신설

현 행	○ 해당 조항 없음
개정(안)	○ 배당금 지급청구권 5년간 미 행사 시 시효 소멸 ○ 시효 완성 후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

-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 파견 요청 및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신설

현 행	○ 해당 조항 없음
개정(안)	○ 시장에게 공사 정원의 5/100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 지급 가능

3. 참고 사항

- 가. 제안근거 : 공사 정관 제20조,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서울시 공개업무담당관-2493호, '18. 3. 2.)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합의 필
- 라. 절 차 :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이사회 의결, 서울특별시장
인가 후 공포·시행
- 마. 기타 참고사항 : 1. 정관 중 개정 정관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시 투자기관 정관 표준안 1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임기) 제1항 단서 중 “선출하여야 한다”를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항을 제4항을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제4항 본문중 “감사한다”를 “감사하며, 유고 시에는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1항 2호 내지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
3.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

제19조(임·직원의 보수)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결사항) 종전 19호를 20호로 하고, 19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9. 생산 재화 및 용역의 판매 가격

제27조(의장 및 소집) 조문제목 “이사회회의 의장”을 “의장 및 소집”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의결을 통해”를 “선임하되 이사회회의 의결을 통해”로 한다.

제2항 본문 중 “의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를 “이사회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로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회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회의 소집)를 삭제하고, 제29조를 제28조(의결방법)로 한다.

제1항 본문 중 “재적이사”를 “출석이사”로 하고, 단서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0조(의사록 작성) 및 제31조(사업연도)를 각각 제29조(의사록 작성) 및 제30조(사업연도)로 한다.

종전 제32조(예산과 결산)을 제31조(예산과 결산)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중전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본문 중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사는”으로 한다.

중전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전 제4항은 삭제한다.

중전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을 제32조(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한다.

중전 제34조(손익금의 처리)를 제33조(손익금의 처리)로 한다.

중전 제35조(재산의 관리와 처분)를 제34조(재산의 관리와 처분)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중전 제36조(사채발행)을 제37조로 하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기금)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전 제36조(사채발행), 제37조(차관)을 각각 제37조(사채 발행), 제38조(차관)으로 한다.

중전 제38조(자금 차입)을 제39조(자금 차입)으로 하고, 본문을 삭제하며, 다음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설한다.

-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중전 제39조(정관의 변경)을 제40조(정관의 변경)으로 하고, 본문 중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칙<제38차, 2018. 10. ○○.>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u>선출</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 〈신설〉</p> <p>③ (생략)</p>	<p>제11조(임기) ① ----- ----- ----- ----- ----- ----- <u>선출</u> 하여 임명하여야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2조(임원추천위원회)</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 까지 존속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12조(임원추천위원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 ~ ③ (생략)</p> <p>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u>감사</u>한다.</p>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감사</u>하며,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생략)</p> <p>2. <u>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3.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p> <p>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제14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미성년자</u> 〈삭제〉 〈삭제〉</p>

현행	개정
<p>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p> <p>〈신설〉</p> <p>〈신설〉</p> <p>7.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p> <p>② ~ ③ (생략)</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삭제〉</p> <p>4. 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6. 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 (생략)</p> <p>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p>
<p>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1.~18. (생략)</p> <p>〈신설〉</p> <p>19. (생략)</p>	<p>제25조(의결사항) (현행과 같음)</p> <p>1.~18. (현행과 같음)</p> <p>19. 생산 재화 및 용역의 판매 가격</p> <p>20. (현행 제19호와 같음)</p>
<p>제27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결을 통해 선출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p> <p>② 의장은 이사회 회의 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p>	<p>제27조(의장 및 소집) ① ----- ----- 선임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해 ----- -----.</p> <p>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p>

현행	개정
<p>〈신설〉</p>	<p>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제2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p> <p>③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p> <p>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제28조(이사회 소집) 〈삭제〉</p>
<p>제2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생략)</p>	<p>제28조(의결방법) ① ----- -----출석이사----- ----- .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현행	개정
제30조(의사록 작성) (생략)	제29조(의사록 작성) (현행과 동일)
제31조(사업연도) (생략)	제30조(사업연도) (현행과 동일)
<p>제32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 지체없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1조(예산과 결산) ①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삭제></p> <p>② 공사는 -----.</p> <p>③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생략)	제32조(회계처리의 원칙) (현행과 동일)
제34조(손익금의 처리) (생략)	제33조(손익금의 처리) (현행과 같음)
제35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생략)	제34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현행과 동일)
<p><신설></p>	<p>제35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p>
<p><신설></p>	<p>제36조(기금) 시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제36조(사채 발행) (생략)	제37조(사채 발행) (현행과 동일)
제37조(차관) (생략)	제38조(차관) (현행과 동일)
<p>제38조(자금 차입)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39조(자금 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39조(정관의 변경)</p> <p>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p>	<p>제40조(정관의 변경)</p> <p>————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이하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에서 출자한다.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광고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당해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

2.

3.

4.

5.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 운영 기본계획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행사업)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사의 팀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을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23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장·단기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일시차입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변경에 관한 사항
9.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3.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5. 생산재화 및 용역의 판매가격
16.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8.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19.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결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규정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의 결산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공단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1. 이월결손금보전

2. 이익준비금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6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37조(배당금 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38조(기금)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사채 등 발행

제39조(사채발행) ①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제40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1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공무원의 파견요구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